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54

발의연월일: 2021. 4. 22.

발 의 자:정일영·고용진·김경협

김병주 · 김정호 · 김종민

김주영 · 맹성규 · 민형배

소병철 · 송영길 · 신동근

양정숙・양향자・유동수

유관석 • 유준병 • 이원욱

주철현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차 사고로 초등생이 사망하는 등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사고 발생 당시 제한 속도를 준수했음에도 사망까지이른 점, 키가 작은 학생이 화물자동차 운전석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스쿨존 인근 화물자동차의 이동량을 제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음. 특히 화물차주차장이 학교에 근접한 경우, 화물차의 이동량이중대되어 어린이 교통 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화물차주차장의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차고지 설치자가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가 학생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도지사나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5조제6항).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가 학생통학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협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가 학생통학 안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
	<u>다.</u>